

의안
번호

349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06. 09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49호
- 다. 제출일자 : 2021. 0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05. 28.

2. 제안이유

-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영유아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간제 보육 사용료를 '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에 따름'으로 내용 변경
(별표 2, 제27조제2항 관련)
- 나. 월곡센터와 보문센터간 사용료 내용 일치(별표 2, 제27조제2항 관련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 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
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1. 4. 15. ~ 2021. 5. 5.(20일간)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개정안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 내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유아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27조1) 관련 별표2의 사용료 기준액을 변경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현행 시간제 보육료를 ‘시간당 4,000원’에서 ‘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에 따름’으로 변경하고, 놀이체험 프로그램 사용료(2만원 이하)와 명칭을 조정·변경하는 것으로,
- 시간제 보육료는 「영유아보육법」 2)에 의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바, 지침에 따라 보육료가 변경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,

〈 시간제 보육 사용료를 ‘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에 따름’으로 변경〉

구 분		현 행		변경후
월곡	시간제보육	시간당	4,000원	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
보문	시간제보육	시간당	4,000원	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

- 1) 「서울특별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27조(사용료 등)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·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·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 ②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으며, 제19조4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의2(시간제보육 서비스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, 지원대상, 지원방법,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24.>

- 놀이체험 프로그램 사용료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한 것은 월곡·보문센터 간 놀이 체험 프로그램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와 명칭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며, 현재 월곡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도예와 요리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취지임.

〈월곡센터와 보문센터간 사용료 및 프로그램명 일치〉

- 단체놀이·개인놀이 프로그램(월곡)

구 분		현 행		변경후
월곡	단체놀이 프로그램	놀이+ 요리	9,000 원	20,000원 이하
		놀이+ 도예A	6,000 원	
		놀이+ 도예B	9,000 원	
	개인놀이 프로그램	놀이+ 요리	9,000원	20,000원 이하
		놀이+민들개+요리	12,000원	

- 놀이·문화강좌, 교육 및 세미나(보문)

	구 분	사 용 료		비 고
현행	전문가 놀이·문화강좌	월	40,000원 이하(재료비 별도)	-
	교육 및 세미나	회당	30,000원 이하(재료비 별도)	-
변경 후	놀이·문화강좌	월	40,000원 이하(재료비 별도)	-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
	교육 및 세미나	회당	30,000원 이하(재료비 별도)	-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월곡·보문센터 간 사용료를 일치시키고,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